

승급 경력인정기관

(2018.6.1. 기준)

- 종합병원(대학병원)
: 정신건강의학과 소속¹⁾이거나 타과 소속일지라도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(업무분장표²⁾ 제출)
- 정신과 단일의료기관 (정신병원, 정신과의원)
- 정신요양시설
- 정신재활시설
- 보건소 정신보건팀
: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정신건강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(업무분장표 제출)
- 정신건강복지센터
-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- 자살예방센터
- 트라우마센터 (국가트라우마센터, 안산, 광주, 대구, 제주)
-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
- 법무부 스마일센터
-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
- 치매안심센터
- 중앙 및 각 시·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
-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
: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「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 관련 사업과 활동을 하도록 설립되었으므로 ‘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’에 해당, 사업 위탁 시점(설립일)이후로 경력인정
-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(간호사에 한정, 증명서에 정신간호 분야에 근무 기재)
- 보건복지부콜센터(129)
: 긴급지원, 정신건강위기상담 등을 하도록 설립되었으므로 ‘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’에 해당, 사업 위탁 시점(설립일)이후로 경력인정

조건부 승인 기관 (업무내용 검토 후 인정)

- 법무부 관련 기관 : 정신보건분야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(교정본부 심리치료 업무, 치료감호소/보호관찰소/소년원/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수강명령, 분류보호, 분류심사 업무)
- 노숙인 지원시설 :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·운영 허가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정신보건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
- 해바라기센터 : 여성가족부 지정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지원업무 등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

※ 추가로 적용된 경력인정기관의 인정시점의 경우, 정신건강증진시설, 보건소는 인정시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시점부터 경력 인정이 됩니다.

1) 「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)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18년 4월에 승급 경력인정기관 범위를 확대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2) ‘업무분장표’ :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 시, 수행한 업무 기재 (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처리한 업무분장표)